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21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 어기구 • 박지원 • 김성환

복기왕 · 김주영 · 이개호

이병진 • 박희승 • 이정문

권향엽ㆍ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임.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 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 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
- 2.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 3.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① 환경부
	<u>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환경성</u>
	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
	<u>을 할 수 있다.</u>
	1.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
	른 환경성적 가(假)산정
	2.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
	<u>항 검토</u>
	3.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사항</u>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
	의 인증을 위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
	<u>굴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실태</u>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u>로 정한다.</u>